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가단12349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정원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1. 4. 21.

판 결 선 고 2021. 5. 26.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7,691,126원 및 그중 8,116,356원에 대하여 2020.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7%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들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5. 6. 1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3.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4호증, 을나 제1,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 D기관, 주식회사 E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양수대상 채권의 발생

1) F 주식회사 대출금

가) F 주식회사는 2014. 11. 10.경 피고 B에게 10,000,000원을 계약만료일 2017. 4. 27., 이율 및 지연손해금률 각 연 34.894%,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으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피고 B은 제때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F 주식회사는 2015. 12. 31. G 주식회사에게, 위 회사는 2018. 10. 26. 원고에게 각각 피고 B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순차 양도하고 위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각 채권양도에 따른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채권양도통지가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다) 2020. 5. 18.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피고 B의 미지급원리금은 합계 23,506,215원(= 잔여 원금 8,499,291원 + 2020. 5. 18.까지 발생한 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5,006,724원) 및 그중 잔여 원금 8,499,291원에 대하여 2020.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8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 된다.

2) 주식회사 E의 신용카드채권

가) 피고 B은 2014. 1. 6. 이전 일자불상경 주식회사 E와 사이에 신용카드사용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으나, 피고 B은 제때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한편 위 신용카드사용약정 당시 약정된 지연손해금률을 연 23.7%이었다.

나) 주식회사 E는 2018. 11. 14. H 주식회사에, 위 회사는 2019. 12. 13. 원고에게 각각 피고 B에 대한 위 신용카드채권을 순차 양도하고 위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각 채권양도에 따른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채권양도통지가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다) 2020. 5. 18.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피고 B의 미지급원리금은 합계 17,691,126원[= 잔여 원금 8,116,356원{= 8,119,787원(= 8,117,087원1) + 2,700원2)} - 2016. 1. 4. 소멸포인트 3,431원} + 2020. 5. 18.까지 발생한 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9,574,770원{= 9,574,606원(= 인수전 이자금액 8,520,756원 + 인수후 이자금액 1,054,014원3) - 164원4)} + 위 164원5)}] 및 그중 잔여 원금 8,116,356원에 대하여 2020.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 된다.

3) 주식회사 I의 대출금채권

가) 주식회사 I은 2014. 11. 10. 피고 B와 사이에 5,000,000원을 상환방식 원리금균등상환, 대출만료일 2017. 11. 10., 이자 및 지연손해금률 각 연 34.9%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으나, 피고 B은 제때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주식회사 I은 2015. 11. 19. 원고에게 피고 B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5. 12. 1.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 B에게 위 채권양도차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채권양도통지가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다) 2020. 5. 18.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피고 B의 미지급원리금은 합계 12,196,995원(= 잔여 원금 4,413,069원 + 2020. 5. 18.까지 발생한 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7,783,926원) 및 그중 잔여 원금 4,413,069원에 대하여 2020.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이 된다.

나. J의 부동산 소유 및 사망

J은 생전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순번 1 내지의 4의 경우는 지분소유, 이하 각각 ‘이

사건 1 내지 5 부동산'이라고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하고 있다가 2005. 10. 16. 배우자 K, 자녀 피고들, L, M을 두고 사망하였다.

다. 상속재산 협의분할 및 이전등기

- 1) 망 J의 공동상속인들은 2015. 6. 16.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C이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 2) 피고 C은 이 사건 분할협의를 2015. 6. 16. 이루어졌음에도 등기신청 시 등기원인을 '2005. 10. 16.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하여 2015. 6. 1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피고 B의 자력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피고 B은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았고, F 주식회사, 주식회사 E, 주식회사 I에 대한 각 해당 대출원리금채무 또는 카드원리금채무를 비롯하여 다수의 금융 관련 채무7)를 부담하고 있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주식회사 E 관련 미지급 신용카드대금 17,691,126원(= 잔여 원금 8,116,356원 + 2020. 5. 18.까지 발생한 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9,574,770원) 및 그중 잔여 원금 8,116,356원에 대하여 2020.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피고 C의 본안 전 주장에 관한 판단

-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79320 판결 참조). 그리고 사해행위가 있는 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면서 피보전채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양도인이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2) 먼저 위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양도인과 양수인 중 누가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이 진행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런데 양도인인 F 주식회사, 주식회사 E, 주식회사 I이 각각 원고에게 해당 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사해행위인 이 사건 분할협의를 취소원인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행사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이 양도인인 F 주식회사, 주식회사 E, 주식회사 I이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국 양수인인 원고가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객관적 사실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고 B이 양수금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인 이 사건 분할협의를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에 비로소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C은, 피고 B이 2015년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소재한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원고가 그 이후 위 주택으로 채권양도통지서 우편물을 보낸 점 등에 비추어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2015년경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인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인 2020. 5. 27.에서야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선해하였다).

살피건대, 을나 제5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2015. 6. 19.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소재한 주택[부산 해운대구 N건물, O호]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그 후 F 주식회사, 주식회사 E 등이 위 주택으로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1년 전인 2019. 5. 27.보다 앞선 시점에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 즉 망 J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분할협약이 있었던 사실뿐만 아니라 나아가 채무자인 피고 B의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 즉 피고 B이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C이 단독으로 상속하는 데 동의하였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 C의 본안 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F 주식회사, 주식회사 I로부터 양수한 해당 대출원리금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약 전에 대출원리금의 분할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원고가 주식회사 E로부터 양수한 카드원리금채권 중 카드 원금 8,117,087원 부분8)은 피고 B이 이 사건 분할협약일(2015. 6. 16.) 이전에 주식회사 E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위 각 채권이 이 사건 분할협약 전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약은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약을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망 J이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은 그 상속비율에 따라 망 J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을 상속하게 되었고, 만일 망 J의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비율에 따라 망 J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피고 B이 보유하게 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지분이 2015. 6. 16. 당시 위 피고의 유일한 적극재산이 되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 B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을 이 사건 분할협의를 의하여 무상으로 피고 C에게 이전하여 주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피고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B 등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자신이 망 J을 부양한 점을 고려하여 망 J의 재산을 자신이 단독으로 상속하는 데 동의한 것이고, 이 사건 분할협의 결과는 자신이 공동상속 시 응당 받아야 할 기여분에 상응하는 것이어서, 즉 자신의 기여분이 존재하여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나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C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인정되므로,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위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피고 B의 재정상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가) 결국 피고들 사이에 2015. 6. 16. 망 J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B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11 지분에 관한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한편 주식회사 E의 카드원리금채권 중 2014. 1. 6.부터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인 2015. 6. 15.까지 사용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은 17,691,693원(= 원금 8,116,356원 + 2020. 5. 18.까지 발생한 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9,574,606원)이 되므로9), 원고는 위 각 양수금채권 중 합계 53,394,172원(= F 주식회사 23,506,215원 + 주식회사 E 17,690,962원10) + 주식회사 I

12,196,995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53,394,172원이 망 J이 소유하였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또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등을 기초로 하여 별지 2 계산내역 기재와 같이 산정한 평가액 중 피고 B의 상속지분 2/11에 해당하는 12,677,780원을 현저히 초과함은 계산상 분명하므로(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등이나 시세를 반영하더라도 위 평가액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53,394,172원을 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B의 11/2 상속지분에 관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다)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 C은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이순형

별지

부동산 목록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P 대 63㎡ 중 175/6300 지분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Q 대 2000㎡ 중 555/20000 지분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R 대 188㎡ 중 52/1880 지분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S 대 46㎡ 중 12/460 지분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P, Q, R, S

철근콘크리트조 시멘트 기와지붕 2층 주택

1층 24평 2층 24평

내 2층 O호

조표T 12평. 끝.

별지 2

계산내역

○ 이 사건 1 내지 4 부동산(대지)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0. 1. 1.자 ㎡ 당 개별공시지가 : 1,002,000원

○ 이 사건 1 내지 4 부동산 지상에 건축된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인 이 사건 5 부동산의 ㎡ 당 건물가액 150,000원(대지의 ㎡ 개별공시지가 1,002,000원, 건물신축가격기준액 730,000원 고려)

○ 시가 산정(각 원 미만 버림)

- 이 사건 1 부동산 : 318,818원(①) = $1,002,000\text{원} \times 63\text{㎡} \times \text{망 J 소유지분 } 175/6300 \times \text{피고 B 상속지분 } 2/11$

- 이 사건 2 부동산 : 10,111,090원(②) = $1,002,000\text{원} \times 2,000\text{㎡} \times \text{망 J 소유지분 } 555/20,000 \times \text{피고 B 상속지분 } 2/11$

- 이 사건 3 부동산 : 947,345원(③) = $1,002,000\text{원} \times 188\text{㎡} \times \text{망 J 소유지분 } 52/1,880 \times \text{피고 B 상속지분 } 2/11$

- 이 사건 4 부동산 : 218,618원(④) = $1,002,000\text{원} \times 46\text{㎡} \times \text{망 J 소유지분 } 12/460 \times \text{피고 B 상속지분 } 2/11$

- 이 사건 5 부동산 : 1,081,909원(⑤) = $150,000\text{원} \times 39.67\text{㎡} \times \text{피고 B 상속지분 } 2/11$

- 합계 : 12,677,780원(= ① + ② + ③ + ④ + ⑤). 끝.

1) 피고 B이 2014. 1. 6.부터 2015. 6. 15.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대금의 합계액(이 법원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확인된 특수채권편입전표내역조회의 순번 1 내지 49의 원금 합계액)이다.

2) 피고 B이 2015. 7. 15.부터 2015. 9. 15.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대금의 합계액(이 법원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확인된 특수채권편입전표내역조회의 순번 50 내지 52의 원금 합계액)이다.

3) 갑 제7호증 참조

4) 피고 B이 2015. 7. 15.부터 2015. 9. 15.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대금의 합계액 2,7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이 법원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확인된 특수채권편입전표내역조회의 순번 50 내지 52의 연체료 합계액)이다.

5) 각주 4) 참조

6) 망 J의 사망일이다.

7) 이 법원의 D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8) 판결문 제3면 각주 1) 참조

9) 판결문 제3, 4면 참조

10) 피고 B이 2014. 1. 6.부터 이 사건 분할협의일 이후인 2015. 9. 15.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대금의 전체 원리금 합계액(이 법원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확인된 특수채권편입전표내역조회의 순번 1 내지 49의 원리금 합계액에서 2016. 1. 4. 소멸예정포인트 3,431원을 뺀 금액)이다.